

선거시행세칙

[수원대학교 총학생회 세칙 제1호]

- 제정 : 1985. 09. 14
- 개정 : 2011. 01. 03
- 개정 : 2017. 01. 02
- 개정 : 2018. 10. 01
- 개정 : 2019. 10. 01
- 개정 : 2020. 10. 05
- 개정 : 2021. 01. 26

<목 차>

제1장 총 칙	2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2~3
제3장 기 관	3~7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3절 선거시행세칙 협의모임	
제4장 재 정	8
제5장 선 거	8~16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2절 후보 등록	
제3절 선거운동과 이의 제기	
제4절 투표	
제5절 참관인	
제6절 개표	
제7절 당선 공고와 이의 제기	
제8절 선거 부정	
제9절 당선 무효	
제10절 재선거	
제11절 선거의 종료	
제6장 징계	16~17
제7장 선거시행규칙	17
부 칙	18

제1장 총 칙

제1조 { 목적 } 이 세칙은 수원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 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수원대학교 전체 학생사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본회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며 민주적인 학생사회를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학생기구 및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에 쓰이는 비용 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거운동본부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 대표자의 책임 }

- ①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회 의원 등 전체 학생 대표자는 「총학생회 회 칙」 및 세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전체 학생 대표자들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 를 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 의결기구 · 집행기구 · 산하기구 · 특별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 적용범위 }

- ① 이 세칙은 수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 ② 단과대학 및 학부 ·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는 해당 기구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선거시행세칙이 없거나 부실한 산하기구는 이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 세칙의 해석 } 이 세칙의 해석은 「총학생회 회칙」 제133조의 원칙에 따른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 선거권 }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입후보 등록 한 자도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 피선거권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정 후보자 6학기 이상 등록, 부 후보자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정회원인 자

3. 중앙운영위원회 대위원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단, 해당 직책을 사퇴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된 자는 등록이 가능하다)
4. 「총학생회 회칙」 및 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5. 성적의 평점 평균이 2.5 이상인 자 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3.0 이상인 자

제3장 기 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 지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라 한다)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정기특별기구이다.

제9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중 4인 이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중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10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 ① 중선관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 ② 중선관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중선관위원장이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중선관위원장직을 승계한다.
 1. 중선관위는 중선관위원장缺위 시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자동으로 소집하고, 1인을 주재자로 선임한다.
 2. 중선관위는 중선관위원 중 1인을 중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선임된 중선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11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 ①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원장이 되며 중선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중선관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중선관위 구성과 구성의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선관위 구성이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으로 불가능할 경우 확대운영위원회 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중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는 중선관위 집행부를 둘 수 있다.
- ⑤ 중선관위는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단선관위"라 한다)의 구성이 불가할 경우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

제12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 중선관위의 임기는 구성 이후부터 해당 선거의 종료일까지

로 한다.

제1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역할]

- ① 중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중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20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시 후보자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중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⑤ 중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 및 배부하여야 한다.
- ⑥ 중선관위는 선거운동본부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⑦ 중선관위는 특정 선거운동본부에게 "경고" 조치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 포스터에 경고장을 부탁하여야 한다.
- ⑧ 중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한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⑨ 중선관위는 특정 선거운동본부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올바른 선거 문화를 해치는 각종 선전물을 삭제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⑩ 중선관위는 중앙운영지원비의 "선거운영비"를 통하여 선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며,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⑪ 중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이후 각 선본의 후보자와 접촉하지 아니한다.
- ⑫ 중선관위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업무에 한정하여 각 선본으로부터 일정 수의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중선관위는 해당 업무의 개시 최소 12시간 전까지 각 선본에 모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불응하는 선본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⑬ 중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의 자격 박탈
 2. 재선거
 3. 선거 일정의 조정
 4. 당선 무효
 5.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 ⑭ 중선관위는 단선관위의 구성을 보고받고 단선관위의 선거 전반을 지도 및 관리한다.
- ⑮ 중선관위는 단선관위가 이관한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

- ① 중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선관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① 중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 제기, 유권해석 및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② 중선관위 회의에서는 이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의 수치 · 수량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중선관위 회의는 중선관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④ 중선관위 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불가피하게 표결하여야 할 경우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중선관위는 중선관위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중선관위원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 ① 중선관위의 집행부는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중앙집행부 임원들로 한다.
- ② 차기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및 학부 ·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소속된 자는 중선관위 집행부가 될 수 없다.
- ③ 집행부는 중선관위를 도와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④ 집행부는 제13조의 제4부터 제9항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박탈]

- ① 본회의 회원은 중선관위원이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이 발생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사안의 경증과 의도성을 파악하여 해당 중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중선관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구성]

- ① 중선관위원 과반이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선관위를 해체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구성하여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해체한 중선관위에 속하였던 사람을 중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중앙운영위는 중선관위를 재구성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19조 [목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통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와 관련된 의사 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제20조 [구성]

-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 ② 선거운동본부의 모든 구성원은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이어야 한다.

제21조 [선거운동본부장]

- ①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이라 한다)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 ② 선본장은 해당 선본의 후보자가 임명한다.
- ③ 선본의 후보자는 해당 선본의 선본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본장의 교체 신청은 중선관위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다.

제22조 [선거운동본부원]

- ①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이라 한다)은 선본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선본원은 본회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자여야 하며 중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③ 휴학생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선관위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재적증명서와 구비서류를 지출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선관위원과 중선관위 집행부
 2. 학생회 공식 지위에 있는 자(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회 의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원,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임원)
 3. 학생총회, 확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한 자
 4.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 수수를 받은 자

제23조 [선거운동본부 명칭]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명칭(이하 "선본명"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본명은 타 선본 및 산하기구 선본의 선본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③ 이외 올바른 학생사회 형성에 저해되는 선본명의 제한 여부는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24조 [선거운동본부 색상]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색상(이하 "선본색"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본색은 타 선본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③ 이외 올바른 학생사회 형성에 저해되는 선본색의 제한 여부는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25조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사무실(이하 "선본실"이라 한다)을 정하여 입후보 등록 시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선 시 선본실이 중복될 경우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협의 후 중선관위를 통해 선본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선본은 입후보 등록 이전에 해당 사무실의 관리자와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각 선본의 선본실 외에는 선본옷과 유세 선전물을 비치할 수 없다.
- ⑤ 선본원은 타 선본의 선본방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선본실로 사용할 수 없다.
 1. 학생회 공식기구의 사무실(총학생회실, 단과대학 학생회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기구의 사무실. 단, 학부 · 학과 학생회실 및 동아리의 방은 예외로

한다.)

2. 학생총회, 확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의 사무실
제26조 { 선거운동을 위한 사퇴 }

- ① 제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 ② 중선관위는 선거 공고와 함께 사퇴서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소속하고자 하는 선본의 후보자가 선본원 명부를 제출하기 10일 전 중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선관위는 사퇴서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수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사퇴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⑤ 사퇴한 자는 절차를 준수하여 선본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 { 그 밖의 사항 } 이외 선거운동본부과 관련한 사항은 중선관위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제3절 시행세칙 협의모임

제28조 {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지위 } 시행세칙 협의모임(이하 "시세협"이라 한다)은 선거를 당해 사정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제29조 {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구성 } 시세협은 중선관위원회와 각 선본의 선본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 {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역할 }

- ① 중선관위는 시세협을 통하여 각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 간 의견을 적극 중재하여야 한다.
- ② 중선관위는 각 선본의 후보자와 후보자 등록 이후 접촉하지 아니하며 선본장을 통한 시세협 모임으로만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다.
- ③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선본방 사용을 합의한다.
- ④ 시세협에서 결정한 사항은 선거시행규칙에 준한다.

제31조 {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운영 }

- ① 중선관위원장은 시세협의 소집 권한을 가진다.
- ② 선본에서 시세협의 소집을 희망할 경우 각 선본의 선본장은 중선관위원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선본의 선본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세협에 참석하지 못할 시 선본장의 역할을 선본원 중 1인에게 위임하고 해당 선본원이 시세협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선관위는 위임사유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선본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선본은 반드시 선본장을 통하여 중선관위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⑤ 시세협에서의 합의는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되, 그러지 못한 경우 중선관위는 다수 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32조 { 회계 기간 } 선거의 회계 기간은 중선관위의 구성일로부터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3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원 }

- ① 선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제4장 제5절 특별기구 재정에 의거하여 중앙운영지원비의 "선거운영비"를 통하여 조달한다.
- ② 중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각 선본으로부터 자료집 및 포스터 등 선전물 제작을 위하여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의 예산을 심의 · 검토하고 이를 중앙운영지원비의 "선거운영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한다.
- ② 예산의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수정할 경우 중선관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 }

- ① 중선관위는 각 항목별로 결산 내역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총학생회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선관위는 선거의 결산을 선거 종료일 이후 시행하는 첫 번째 중앙운영위원회 정기 회의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선 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36조 { 선거 일정 결정 }

- ① 중선관위는 구성 후 즉시 선거 일정에 관하여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선거는 2학기 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중선관위는 선거의 모든 일정을 설정함에 있어 이 세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제37조 { 선거 공고 }

- ① 중선관위는 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즉시 해당 사항을 공고한다.
- ②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후보자 등록 및 심의 기간
 2. 후보자 등록 완료 및 공고일
 3. 선거운동 기간
 4. 투표 및 개표일
 5. 후보자 등록을 위한 사퇴서 제출 기한
 6. 선본원 등록을 위한 사퇴서 제출 기한

제38조 { 선거 관련 서류 양식 } 중선관위는 선거 공고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서류들의 양식을 설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및 선본원 등록을 위한 사퇴서 양식
2. 입후보 등록원서 양식
3. 정·부 후보자 자필 소견서 양식
4. 선본원 명부 양식

제2절 후보 등록

제39조 { 입후보 등록 }

- ① 피선거권을 가진 본회의 회원 중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중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자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중선관위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출마 형태는 정후보 1인과 부후보 1인의 형태로 한정한다.
- ③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파일의 형식은 중선관위의 공고에 따른다.
 1. 입후보 등록원서 1매
 2. 정·부 후보자 자필 소견서 각 1매
 3. 정·부 후보자 재학증명서 각 1매
 4. 정·부 후보자 성적증명서 각 1매
 5. 정·부 후보자 사진파일(단, 6개월 이내에 찍은 단정한 용모의 사진)
 6. 선본원 명부
 7. PDF 형식의 정책자료집(188*257mm)
 8.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거 용품

제40조 { 후보자 등록 심사 및 확정 공고 }

- ① 중선관위는 공고한 입후보 등록일에 맞추어 입후보하려는자의 자격과 서류 일체를 심사 및 검증한다.
- ② 후보자 등록 심사는 중선관위 주체로 진행하며 각 선본의 후보자 및 선본장이 참석한다.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후보자 혹은 선본장 불참 시 해당 선본의 후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 ③ 선본이 중선관위에서 공고한 입후보 등록 시간 이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④ 중선관위에서 공고한 등록일 이후에는 등록을 금한다.
- ⑤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등록을 접수하고 3일 이상의 심의 기간을 둔다.
- ⑥ 후보자 등록을 요청한 선본이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 심의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다.
- ⑦ 중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 이후 5일 이내에 등록을 요청한 모든 선본의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 등록 무효 }

- ① 입후보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본 및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중선관위에서 규정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또한 부족한 서류를 심의기간 내에 다시 제출할 것을 해당 선본에 요청하였지만 이에 불응한 때
 3. 중선관위에서 규정한 사안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② 선본 및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선관위는 즉시 해당 선본 및 후보자의 등록 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과 이의제기

제42조 { 선거운동의 정의 }

- ① 선거운동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 선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본회 회원은 선본에 선본원으로서 참여하여 이 세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선본 및 후보자의 개인 유세
 2. 선본 및 후보자의 합동 유세
 3. 선본 및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4. 선본 및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선전

제43조 { 유세 및 선전 }

- ① 유세는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중선관위에서 정한 기간과 공간 내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유세 선전물은 인쇄매체, 중형선전물(현수막, X배너 등), 피켓 및 선본옷에 한한다.
- ③ 중선관위는 선본의 선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본의 선전물을 제거하거나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고 이를 본회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시 중선관위에 제출 및 허가된 선전물
 2. 중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비치 및 부착된 선전물

제44조 { 선거운동의 기간과 공간 }

- ① 선거운동의 기간은 입후보 확정 공고일 이후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선관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해 공고할 수 있다.
- ② 이외 선거운동의 시간에 대한 제한은 중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③ 선거운동의 공간은 교내로 제한하며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 ④ 선본이 중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운동 기간 또는 공간을 어길 경우 중선관위는 사안의 의도성을 판단하고 의도적인 경우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45조 { 학생회 및 언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 ① 학생회(총학생회 및 각 산하기구) 공식기구 및 교내 언론사는 특정 후보자나 선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
- ② 선본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중선관위는 해당 단체 및 기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 [이의 제기의 방식]

- ① 각 선본은 이 세칙에 위반되는 타 선본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는 해당 선본의 선본장만 가능하다.
- ③ 각 선본은 선본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한다.
- ④ 투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투표소의 파견된 투표참관인이 선본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⑤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본장이 구두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⑥ 본회의 회원은 10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48조 [이의 제기의 처리]

- ① 이의 제기가 있으면 중선관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 한다.
- ② 이의 제기의 처리는 중선관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의 제기 처리 의결 결과에 따라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4절 투표

제49조 [투표 기간] 중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2일을 투표 기간으로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투표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0조 [투표 기간의 연장]

- ① 모든 투표를 종료한 후에도 투표율이 25%를 넘지 않는 경우 투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연장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를 돌아오는 월요일로 변경한다.

제51조 [투표시간]

- ① 중선관위는 투표시간을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투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8시까지 대기줄에 선 경우 투표를 허용한다.

제52조 [투표소의 설치]

- ① 중선관위는 지정한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중선관위는 투표소의 설치 정소를 확정하고 투표 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투표소에는 해당 투표소의 선관위원, 참관인 및 투표자를 제외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 ④ 선관위원과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제53조 { 선거인명부 }

- ① 중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는 해당 투표구에 해당하는 단선관위와 공유한다.
- ③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성별, 소속, 학번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선거인명부 확정 후 휴학, 자퇴 및 그 밖에 선거권자의 신상이 변동되는 경우 중선관위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54조 { 투표자의 확인 }

- ① 투표소를 관리하는 선관위원은 선거인명부와 투표자의 신분증을 통하여 투표자를 확인한다.
- ② 선관위원 또는 참관인에 의하여 이중투표나 대리투표를 확인할 경우 해당 발견자는 즉시 중선관위에 보고하고 중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 { 투표 절차 }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 ② 단과대학 및 학부 · 학과 학생회장단의 투표는 선거권자가 속한 단과대학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투표자는 투표소를 방문하여 선관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고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선거권자임을 확인받는다.
 1. 학생증
 2. 포털시스템
 3. 재학증명서
 4. 등록금 영수증
 5. 그 밖의 재학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
- ④ 선관위원은 투표자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 ⑤ 투표자는 배부 받은 투표용지로 투표한다.

제56조 { 투표용지 }

-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총학생회 선본을 기재하는 "중앙투표용지"
 2. 단과대학 및 학부 · 학과 선본을 기재하는 "단대투표용지"
- ② 투표용지에는 선본의 선본명 및 으뜸 구호, 후보자의 성명 소속 및 학번을 기재할 수 있다.
- ③ 투표용지에 선본과 후보자의 란은 가로 병렬로 배치한다.
- ④ 투표용지는 만 원권 지폐의 크기(161*76mm)로 제작한다.

제57조 { 투표함의 구분 } 투표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총학생회 선본의 투표용지를 넣는 "중앙투표함"
2. 단과대학 및 학부 · 학과 선본의 투표용지를 넣는 "단대투표함"

제58조 [투표함의 봉인과 보관]

- ① 선관위원은 투표시간 종료 후 참관인과 선관위원의 서명 후 투표함을 봉인하여야 한다.
- ② 중선관위는 각 선본의 참관인과 동행하여 봉인한 중앙투표소의 투표함을 중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다만, 개표일에 한하여 각 선거의 개표장으로 옮긴다.
- ③ 단선관위는 각 선본의 참관인과 동행하여 봉인한 단대투표소의 중앙투표함은 중선관위 사무실로, 단대투표함은 단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다만, 개표일에 한하여 각 선거의 개표장으로 옮긴다.
- ④ 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 ⑤ 선관위는 투표함을 선관위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를 옮기기 전까지 선관위원의 관리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 [후보자의 투표소 접근 제한] 후보자는 투표를 제외한 때에는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

제5절 참관인

제60조 [참관인의 자격]

- ① 각 선본은 투표소 당 1인의 선본원을 참관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 배치를 신고한 선본원 1인의 성명과 선본명을 적은 명찰을 제작하여 참관인에게 배부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 ③ 동일 선본 내의 다른 선본원은 명찰을 인계받아 참관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61조 [참관인의 역할]

- ① 참관인은 투표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 및 참관하여야 한다.
- ② 참관인은 각 선본 간 협의에 따라 투표 독려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참관인은 투표일 09시 정각까지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함을 투표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62조 [참관인의 제한]

-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난하거나 선거 선전물을 소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중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한 행위
- ② 중선관위원은 투표소에서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참관인을 즉시 제지하고 해당 참관인의 행위를 중선관위에 보고한다.
- ③ 중선관위는 제2항의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참관인에게 퇴장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로부터 퇴장을 조치 받은 참관인은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제63조 [참관인의 이의제기]

- ① 참관인은 중선관위에 투표 진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참관인이 투표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중선관위원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단, 한 시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재개한다.
- ③ 참관인이 해당 투표소에 불참한 선본은 선관위원과 상대 선본의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절 개 표

제64조 [개표시작과 순서]

- ① 투표가 종료되면 중선관위의 감독과 각 선본장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 1. 투표인명부 작성의 종료
 - 2. 투표자수가 유권자수의 25%에 달함
 - 3. 모든 투표함의 도착
 - 4. 중선관위원장 및 3분의 2 이상의 중선관위원 참석
 - 5.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제65조 { 무효투표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① 해당 투표구의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③ 두 곳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 ④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
- ⑤ 해당 투표구의 선관위 도장이 없는 것

제66조 { 유효투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 ①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② 한 후보의 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 ③ 기표란 이외에 기표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67조 { 개표일과 개표장소 }

- ① 개표일은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단,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중선관위는 협의 후 조정하여 재공고 한다.
- ② 총학생회 선거는 단대선거의 개표와 투표율 집계 후 개표를 시작한다.
- ③ 개표장소는 중선관위에서 결정 후 공고한다.

제68조 { 오차와 오차율 }

- ① 오차는 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명부상의 투표자수와 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실제 투표자수의 차(절대값)의 합과 이중투표와 대리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이다.
- ② 오차율은 오차/전체 선거권자 수*100(%)이다.

제69조 { 결선투표 }

- ① 개표의 결과 득표수가 1, 2위인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해당 두 선본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② 결선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결선투표는 중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한 선본이 당선한다. 다만, 개표의 결과 해당 두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결선투표를 반복한다.

제70조 [단일 선본 재투표]

- ① 단일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재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재투표는 중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선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찬성표가 투표수의 과반일 경우 당선한다. 다만,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반복한다.

제7절 당선공고와 이의제기

제71조 [당선공고] 중선관위는 개표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이의제기]

- ① 중선관위는 개표 이후 당선 선본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정한다.
- ② 선본에서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선본장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③ 본회 회원은 중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④ 중선관위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8절 선거 부정

제73조 [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 ① 누군가 투표 방해와 대리 투표, 그 밖의 투표의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
- ②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 ③ 후보자 또는 선본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 ④ 그 밖의 위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제74조 [선거 부정의 판단]

- ① 중선관위는 이의 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중선관위는 선거 부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심되는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중선관위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하며 모든 경과를 본회의 회원과 각 선본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중선관위는 선거 부정의 안건을 논의할 때에 해당 선본의 선본장을 배석하여 해명 기

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제9절 당선 무효

제75조 [당선 무효]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① 선본의 당선 이후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 ② 선거 중 선본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 ③ 당선 선본이 당선을 포기한 경우

제76조 [당선 무효의 공고] 중선관위는 당선 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절 재선거

제77조 { 재선거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오차율이 5% 이상인 때
 - 2. 연장 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25%를 넘지 아니한 때
 - 3. 선거 부정이 발견된 때
 - 4. 당선 선본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재선거가 결정될 시 중선관위는 7일 이내로 재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제11절 선거의 종료

제78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 ① 중선관위는 선거의 제반 업무를 마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다만, 단과대학의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모든 단선관위가 해산한 뒤 중선관위는 해산한다.
 - 1. 선본의 당선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 2. 당선한 선본이 없음을 공고하는 경우
- ② 중선관위의 해산으로 선거는 종료된다.

제12절 보궐선거

제79조 { 보궐선거 }

- ① 의원의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따위의 이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선거를 보궐선거라 지칭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원이 사퇴하였을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진행한다.

제80조 {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

- ① 정 등록자의 사퇴일 경우, 부 후보자의 선거기간중의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한다.

- ② 새로운 후보자가 등록을 희망할 경우, 후보자 제출서류 중, 정책자료집, 선본원 명부를 제외하여 준비한다
- ③ 보궐선거자의 등록 심사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검증한다.

제81조 { 보궐선거의 시기 }

- ① 선출직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② 선거 전 10일 이내로 전체 학생에게 공개한다.
- ③ 선거 후 선거일 기준 10일 이내로 전체 학생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제82조 { 보궐선거의 시행방법 }

- 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익명투표로 진행한다.

제6장 징계

제83조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자의 자격 박탈] 중선관위는 선본 및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선본 및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본이 3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2. 선본이 중선관위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제84조 { 제재조치 }

- ① 중선관위는 선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1. 이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② 선본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선관위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접수한 사안은 무효로 한다.
 2. 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 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제재를 조치하기 전까지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A 사안과 하나의 사안으로 한다.
 3. 선관위가 A 사안에 대해 조치한 이후 발생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할 경우 이는 A 사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 ③ 중선관위는 선본이 "경고"를 조치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조치할 수 있다.
- ④ 중선관위는 "경고"를 조치 받은 선본의 포스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1. 경고장에는 "경고"의 사유와 조치 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경고장은 A4용지 크기(297*210mm)로 한다.
 3. 첫 번째 경고장은 바탕색에 노란색을, 두 번째 경고장은 빨간색을, 세 번째 경고장은 검은색을 사용한다.
 4.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동안 부착한다. 다만, 토요일 15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는 선거를 중단하므로 부착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중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경고장을 철거한다.
- ⑤ "경고"를 조치 받은 선본의 후보자는 다음날 08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경고 사유에 대하여 사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7장 선거시행규칙

제85조 { 선거시행규칙 }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6조 { 제40조 3항에 관한 규칙 }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PDF 형식의 정책자료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로 규정한다.

1. 선본명
2. 후보자의 사진, 소속 및 이력
3. 선본원 명부
4. 핵심 공약 및 설명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1985.09.14)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